

의안번호	제800호
의결 연월일	2024년 월 일 (제 회)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자	최정훈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4년 11월 15일

#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최정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00
----------	-----

발의연월일 : 2024년 11월 15일

발의자 : 최정훈, 안지윤, 김국기,  
박재주, 안치영, 오영탁,  
조성태

## 1. 개정이유

-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으로 기존 문화재 용어가 국가유산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관 명칭 변경
- 국가유산 체제에 맞게 연구원 사업 영역 확장

## 2. 주요내용

- 명칭변경 :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국가유산 체제에 맞게 기관 명칭변경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 충청북도역사문화연구원)
- 제3조(사무소) : 부설기관 설치 조항 추가로 향후 사업영역 확장
- 제5조(사업) : 국가유산 체제에 맞게 기존 사업영역 확장
- 제6조(재원의 조성) : 출연금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유산기본법」,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나. 관련부서 :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제외 사유서

라. 조례안예고 : 예고대상(의회 홈페이지 게시 예정)

##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재단법인 충청북도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와 연관된 역사문화의 체계적인 보존·관리·활용을 위한 충청북도역사문화연구원의 설립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및 명칭)** 법인격은 재단법인으로 하며, 명칭은 충청북도역사문화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연구원의 주된 사무소는 충청북도 관내에 둔다.

② 연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정관)** ① 연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설립자산 및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자격·정수·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7. 이사회 구성 및 의결권 행사와 대표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연구원의 해산과 잔여재산 처리에 관한 사항
10. 업무감사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1. 연구원의 조직 및 규정제정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연구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경유하여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사업)** 연구원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역사문화의 발굴·조사·연구
2. 역사문화자원의 보존·관리·활용
3. 역사문화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4. 역사문화 관련 정책 개발 및 연구
5. 관련 시설 등의 위탁 운영 및 관리
6. 그 밖에 본 연구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제6조(재원의 조성)** 연구원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충청북도 및 시·군의 출연금·보조금·대행사업비 또는 현물
2. 개인·기관·단체 등의 출연금
3. 용역 수탁 등 연구사업의 수익금
4. 지식재산권 등의 수익금 및 출판물 판매 대금
5. 교육 등 그 밖의 수입

**제7조(사업계획 및 결산)** ① 연구원은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서는 회계연도 개시 2개월전까지, 결산서는 다음연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보고·검사 등)** ① 도지사는 연구원의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운영비 등 지원)** 도지사는 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도지사는 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사용을 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11조(잔여재산의 귀속) 연구원이 해산되는 경우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에 귀속된다.

제12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도지사는 연구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자료의 열람 및 제공)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연구원의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자료를 열람토록 하거나 자료를 제공 할 수 있다.

제14조(사업의 위탁)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역사문화의 보존·관리·활용 등에 관련된 사업을 연구원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비밀 준수 의무) 연구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 한 사항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및 절차 그리고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 관련법령 발췌

### □ 국가유산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유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국가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국민의 문화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국가유산이 우리 삶의 뿌리이자 창의성의 원천이며 인류 모두의 자산임을 인식하고, 국가유산의 가치를 온전하게 지키고 향유하며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켜나감으로써 삶을 풍요롭게 하고 미래 세대에 더욱 가치있게 전해 주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이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을 말한다.
2. “문화유산”이란 우리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문화의 고유성, 겨레의 정체성 및 국민생활의 변화를 나타내는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3. “자연유산”이란 동물·식물·지형·지질 등의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4. “무형유산”이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공동체·집단과 역사·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관의 준칙 등)** ① 공익법인은 정관에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액
  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 및 감사의 정수(定數)·임기 및 그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7.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10.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 방법
  11.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정관의 기재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설립허가 기준)** ① 주무 관청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財源)의 수입(이하 각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

②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 징수, 수혜(受惠) 대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공익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지원 및 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원의 합리적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여 지방자치제도의 개선과 지역발전 및 지방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이란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연(出捐)·보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원을 말한다.

**제3조(법인격)**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이하 “지방연구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4조(설립 및 등기 등)**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구(「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주민 수를 말한다) 50만 이상의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에도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③ 지방연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3. 21.>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지방연구원의 장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⑤ 지방연구원의 설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정관)** ① 지방연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연구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 지방연구원의 정관변경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 라 한다)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4항(비용추계서 작성대상) 제1호

### ○ 사 유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내용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별도의 추가 예산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